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5. 23.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41호

제출연월일 : 2017. 5. 2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국토를 「선계획 - 후개발」체계로 관리하고자 한「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2003. 1. 1.)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2017. 3. 20. ~ 2017. 4. 14.(26일간)

(나) 결과: 제출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소관실과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폐지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도시주택과장	조 삼 구
	도시계획팀장	이 현 근
	담 당 자	박 평 운 (041-746-6213)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 타법폐지]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법률 제6655호, 200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

참고 2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년도의 설정) ①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년 내지 20년의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 부터 장래 1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②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제3조(계획인구의 설정) 계획인구는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되, 기준년도 과거 10년간의 인구 통계를 기초로 목표년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댐건설, 공유수면매립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락지구는 계획인구를 이주대상 인구 및 입주계획 인구로 설정한다.

제4조(용도구획의 기준) 도로,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1. 주거용도 :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상업용도 :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과 업무,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생활 시설이 필요한 구역
3. 공업용도 :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공장, 농기계수리공장 등 다른 용도구획과 분리되어야 할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구역

4. 녹　　지 : 주민의 보건위생과 취락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래 개발예정구역은 녹지로 계획하며, 간선도로(국도·지방도)변 또는 공장주변에는 가급적 10미터 내외의 시설녹지대를 두어야 한다.

제5조(토지이용계획) ① 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럭단위로 계획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형화 하여야 한다.

② 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거용도 : 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40제곱미터 내지 50제곱미터, 공동주택지는 계획인구당 25제곱미터 내지 35제곱미터를 계획한다

2. 상업용도 : 주거용도의 10퍼센트이내로 계획하되, 지구안 상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0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인구 비율에 따라 면적율을 조정하여 계획하며,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5퍼센트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공업용도 : 지구의 여건에 따라 필요면적으로 계획한다.

제6조(용도구획별 입지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도 :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저층주택지로서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교통, 상수도, 교육시설 등이 구비된 양호한 주택지의 요건을 갖춘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상업용도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주차, 승하차, 화물적하차에 용이한 취락지의 중심생활구역으로 계획하며, 공동주택지는 상가예

정지를 상업용도로 구획한다

3. 공업용도 :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 외곽으로 계획하되 기존 공업시설이 밀집된 구역은 그 구역을 공업용도로 계획한다

4. 녹　　지 : 지구의 외곽으로 계획한다

제7조(기반시설의 계획기준)취락의 기반시설 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4.10.)

제8조(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건축물의 규모제한)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규모제한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단지조성사업의 시행계획)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예정구역·시행자·시행기간·시행방법·행위제한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녹지의 보존 및 행위제한) 녹지에 대하여는 영농·임업·조경·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계획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허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용도 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기준 (제8조 관련)

1. 건축물의 용도분류 : 건축법시행령 별표1(건축의 용도분류)을 준용한다.

2. 주거용 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기준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기 숙 사
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으로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노유자 시설
사. 근린공공시설
아. 창고시설
자. 종교시설(기도원은 제외한다.)
차. 교육연구시설, 학교시설(초. 중. 고등학교)
3. 상업용 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기준
가. 근린생활시설(공장을 제외한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복합된 단독주택
나. 근린공공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
마. 업무시설
바.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사. 판매시설
4. 공업용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기준
가. 공장
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과 3종정비공장
다. 농기계 수리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마. 창고시설

[별표 2]

건축물의 규모제한 기준 (제9조 관련)

1. 단독주택과 상가는 충고 3층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충고 5층이하, 용적율 20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인구 2만이상의 읍의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으로서 장래 10년 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충고를 8층이하로 완화 할 수 있다.(개정 98.1.10)
3.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총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8.1.10)
가. 일반 상수도의 급수지역이거나 생활용수 시설을 갖추어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장이 건설된 지역이거나 하수 및 오수 처리시설을 갖추어 하수 및 오수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의 건축물의 층고는 3층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